

元山居留地의 都市空間의 形成過程에 관한 考察¹⁾

梁尙湖

(명지대, 경원대 講師, 工博)

1. 序

현재 都市에 대한 관심은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증대되고 있다. 그것은 都市가 人口의 밀집에 의하여 거대한 空間과 복잡한 行態를 보이고, 그 안에서 人間의 모든 活動이 綜合化되면서, 더욱더 비대해 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都市에 대한 史的인 연구 역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時間의 축적물이기도 한 都市의 현위상과 문제의 본질과 근원을 밝히기 위해서는, 과거의 모습을 뒤돌아 보아야만 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현재의 都市가 개발계획가의 손끝에서 계획되고 개발되는 행위에 대한 반발을 의미할 수도 있다.

본 고찰은, 韓國都市의 현모습이 형성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近代時期의 都市에 대한

1) 본고는 拙著, 「韓國近代の都市史研究」, 東京大博士學位論文, 1993.12.21의 해당부분을 개정보완한 내용임.

연구의 하나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近代以前時期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都市, 즉 韓國近代의 성격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開港場居留地중에서, 제2의 開港場인 元山의 居留地²⁾를 대

2) 本考에서의 韓國近代에 대한 정의는, 韓國歷史의 특수성에 대한 감안에 따라, 서구적 개념인 Modern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시기구분을 위한 편의에 따라 현재와 가까운시기라는 時間의 의미로 사용하고자 하며, 구체적으로는 개항이후 1950년까지를 지칭한다. Modern과 같은 概念의 의미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특별히 '西歐近代'라는 용어로 표현하고자 한다.

3) 韓國最初의 開港場居留地인 釜山을 제쳐 두고, 제2의 開港場인 元山의 居留地를 最初의 연구대상으로 택한 이유는, 釜山은 開港이 전부터 일본과의 外交 및 通商의 관계를 위한 倭館이 설치되어 있던 곳이고, 釜山居留地도 倭館의 都市의 형태를 그대로 이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최초로選定된 開港場居留地일 수는 있어도 최초로形成된 居留地는 아니라는 것이다. 따라서, 釜山居留地의 都市空間의 歷史를 연구하기 위해서는 倭館

상으로 한 史의 고찰이데, 일본인 거류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1888년 4월 이후 청국인 거류지가 별도로 구획⁴⁾되지만, 그 지역은 9000평이란 소규모의 면적과 소수의 청국인 거류민만이 이주 함으로써, 도시적인 개발은 상당히 저조하여, 원산거류지의 도시공간의 형성에는 비중있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때문이다.

원래, 居留地는 국가간의 條約 내용에 따라 돌연 한 지역이 설정되어, 주로 무역통상을 위한 都市的 기능을 갖추고 外國人만이 거주하는 특별한 都市이었다. 따라서, 居留地는 都市가 갖는 체계나 형태, 성격등 모든 면에서 기존의 都市와 다르게 된다. 이러한 異質의都市가 朝鮮國領土 위에 새롭게 형성되었음을 역사적으로도 의미를 갖게 하며, 또한 그것들이 大都市로 성장해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도 흥미로운 일이라 하겠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居留地의 性格을 유지하고 있던 시기(개항이후 1910년까지)를 중심으로, 설정경위를 비롯, 都市로서의 형태를 구성해가는 過程과 居留地가 갖는 意味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본 고찰에서는 가능한 한 具體的이고 可視的인 자료를 사용하여 都市空間의 형태에 대한 實證的인 규명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자료의 분석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그 한계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점은, 都市史의 연구에서 建築史學이 제시해야 하는 영역이나 방법론이 명확하지 않은 현상황에서,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2. 元山津의 開港經緯

元山津이 제2의 開港場으로 선정되기까지 外交의 논란이 상당했었음은, 기존의 연구들⁵⁾에서 이미 밝혀진 바이다. 이들 연구를 바탕으로 元山의 開港場 선정에까지의 경위를 재차 정리하고 분석하기로 한다.

에 관한 都市空間의 연구와 더불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1876년 2월 4일 이후 江華島에서 開國交涉을 할 때, 일본정부측은 제2의 開港地로 「永興府海口」를 제안하지만, 朝鮮政府에서는 王陵의 소재지임을 이유로 반대한다. 그러나, 同年 2월 27일 調印의 「朝日修好條規」에 의하여 釜山이 開港된 후, 일본정부측은 同條規 第5款의 규정에 의한 제2, 제3의 開港場의 選定을 본격적으로 요구하여, 1877년 9월에는 外務大書記官 花房義質을 兼任代理公使로 임명, 朝鮮政府와의 협의에 들어간다. 이때 일본外相의 内訓狀⁶⁾을 보면, 제2, 제3의 開港對象地로

4) 원래, 원산거류지는 朝鮮國과 일본의 條約에 의한 개항에 따라 설치된 지역으로써, 최초 얼마간은 다른 외국인의 거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1883년 11월 26일 조인된 朝英修好通商條約의 最惠國條款에 의하여, 각국 외국인이 거류할 수 있게 되고, 1884년 5월 清國領事館이 설치되는데, 1888년까지는 일본인거류지에서 건물을 임대하여 雜居한다. 1888년 이후, 清國人居留地가 별도로 구획되나, 그 시가지건설이나 거주상황은 빈약한 것이었다. 원산개항장의 清國居留地의 상황에 대하여는, 孫禎陸의 韓國開港期都市變化過程研究, 1982.10, 일지사, P.117~122와, 高尾新右衛門의 元山發展史의 해당년도의 기사를 참조.

5) 設定經緯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田保橋潔, 「近代朝鮮の開港研究」,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 1934, 서울 奥平武彦, 「朝鮮の條約港と居留地」, 岩波書店, 1937.5, 동경, 孫禎陸, 「韓國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1982, 서울, 등을 들 수 있는데, 특히 孫禎陸의 연구는 韓國쪽의 자료까지를 확인하고 분석한 종합적인 연구로써, 그 가치는 더욱 크다 할 수 있겠다.

6) 이 内訓狀의 내용은, 1)開港의 일, 2)居留地의 일, 3)公使의 駐在地의 일, 4)新開港場駐在監理官(領事)의 일에 대한 지시이다. 그 중에서 1)항의 개항에 대한 지시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1. 개항의 일
修好條規第5款의 취지에 따라, 2개소의 항구를 개방시킬 것. 즉
그 첫째는, 동해안에 함경도의 풍진만 —영흥부 또는 「라자레프」라 불려 온 만—일 것.
그 둘째는, 전라도에서는 옥구 또는 목포의 주변지역으로 하거나, 혹은 경기도의 강화부에서 인천부까지의 장소로 할 것. (후략)

「豊津灣」 등을 주장할 것을 指示하고 있다. 豊津灣이란 곧 永津灣을 일컬음 7)인데, 1876년 2월초의 江華島開國交涉에서 朝鮮政府가 이미 반대한 바 있는 제2의 開港地「永興灣」을 관철하도록 한 명령인 것이다.

1877년 12월의 開港교섭에서, 花房은 上記의 内訓狀의 지시대로, 永興灣의 북편에 있는 文川郡松田里를 개항지로 요구한다. 이에 대하여, 朝鮮정부의 判接官洪祐昌은, 文川이 王陵의 소재지임을 이유로 들어 재차 거부함 8)으로써, 제2의 開港에 대한 교섭은 난항을 거듭한다. 그러나, 이듬해인 1878년 5월 일본해군의 측량선이 朝鮮政府의 허가도 없이 永興灣일대를 상세히 측량한 결과 9), 文川에 벼금가는 개항지로서 元山津을 지목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1879년 6월 花房은 본국정부의 지시를 받고 개항교섭에 임한다. 이때의 일본정부의 지시란, 『이 港은 貿易에 긴요할 뿐 아니라, 近隣國의 軍事的 準備에 대하여 양국의 利害가 걸려 있으니, 개항에 차질이 없도록 임무를 다 할 것』이란 내용으로, 元山開港에 대하여 상당히 강력한 의지를 나타낸 지시이며, 또한 元山의 軍事的 重要性을 동시에 강조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은 강력한 의지를 가진 일본측의 元山開港요구에 대하여, 朝鮮政府측은 여전히 陵寢근접을 이유로 반대하지만, 陵寢의 所在地를 명확히 구획하도록 하는 일본측의 절충적인 제안에 따라, 1879년 7월 4일 元山開港에 동의하고 만다. 이에 따라, 7월 6일에는 일본측에서 「元山津開港豫約草案7個條 10)」를 제안하는데, 이후 元山개항에 따른 조약의 기본적인 원칙은 이것을 바탕으로 협의되어, 동년 8월 30일에 「元山津開港豫約 11)」이

一 開港之事

修好條規第五款ノ旨ニ依リ,二所ノ港口ヲ開カシム可シ,即チ

其一ハ、東岸ニ於テ、咸鏡道ノ豊津灣—永興府又ハ「ラザレフ」ト稱シ來レル灣ナリ—タル可シ。

其二ハ、全羅道ニテハ沃溝、又ハ木浦ノ邊ニ於テスル歟、或ハ京畿道ニテ江華府ヨリ仁川府マテノ處ニ於テス可シ。 (後略)……로 되어 있다.

田保橋潔「近代朝鮮의 開港研究」,『小田先生頌壽記念 朝鮮論集』,1934, p.620에서 인용.

7) 「豊津灣」은 일찌기 러시아海軍이 주시하던 Port Razaref의 所在地를 가르키는 곳으로, 英國海軍 또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던 곳이다. 일본陸軍參謀局편찬의 朝鮮全圖 (1875년 11월 편, 1876년 일본육군 문고출판)에서 보면, 元山의 북쪽에 「豊津浦」란 이름이 있고, 그灣의 이름을 「ユンヒン灣」(영홍만)으로 기입하고 있으며, 다시 그 북쪽의 작은灣에는 「ラザレフ港」(라자레프항)이라 明記하고 있다. 즉, 豊津灣이란 永興灣을 가르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奥平武彦, 「朝鮮の條約港と居留地」, 岩波書店, 1937.5, 동경, P.440, 을 참조.

8) 이때, 洪祐昌이 文川대신에 元山津을 제의했다라는 主張이 있으나, 이에는 다소 異論이 있다. 즉, 花房은, 「花房代理公使復命概略別記開港一件」에서, 이는 1877년 12월 11일 洪祐昌의 제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나, 朝鮮측의 당시기록인 「倭使日記卷六」에는 그러한 언급이 없으며, 1879년 5월 9일의 교섭에서도 洪祐昌이 직접 이를 부인하고 있다(「倭使日記卷十一」). 그러나, 田保橋潔은 「近代朝鮮に於ける開港の研究」에서, 花房은 당시에 元山의 소재를 認知하고 있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洪祐昌의 發議임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奥平武彦과 孫禎睦의 연구에서는 이 점에 대한 명확한 언급은 없으나, 洪祐昌의 제안이기보다는, 그후의 일본이 행한 측량에 의하여 文川대신의 개항지로 元山이 최적이라는 결론에 달했다는 논지를 평고 있다. 여기에서, 이 점을 명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근거자료는 아직 없다. 단지, 일본측은 1877년 이전에도 수차례의 측량을 하여 이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었음을 사실이고, 洪祐昌과 花房의 교섭에서도 咸鏡道南部의 地圖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田保橋도 인정하고 있는 점, 그리고 元山의 開港에 대해서도 朝鮮政府내의 반대의견은 여전히 높아 洪祐昌이 스스로 제안할 분위기가 아니었다는 점, 1878년 5월의 일본해군의 無斷測量에 의해 일본정부내에서 元山津이 새로이 인지되었다는 점, 또한 일본정부의 입장에서는 洪의 제안이라고 주장하는 편이 후일의 外交的 교섭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생각하면, 洪祐昌의 제안이라기보다 오히려 花房의 발의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필자는 명확한 근거자료가 새로이 밭굴되지 않는 한, 1877년의 元山津의 제시가 洪祐昌의 제안이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기로 한다.

발효되면서, 元山開港이 양국간에 결정된다.

元山개항이 결정되자, 同年10월3일 새로이 임명된 德源府使 金綺秀와 일본측의 花房대리공사, 관리관(영사), 서기관, 상인14명과 함께, 元山津의 居留地예정지를 방문하여, 居留地의 區劃과 도로 및 부두등의 기본시설계획등을 행하며, 同年10월8일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도면2>와 <도면3>등의 略式圖面을 작성하여 결정한다. 이에 따라, 일본정부는 1880년1월 「國內布告第2號」를 발표하여, 同年5월1일부로 元山이 개항됨을 일본국내에 공고하고 渡航者를 모집한다. 이어, 同年5월20일 일본영사관관원과 상인들이 元山居留地에 도착하게 되고, 5월23일에 일본영사관이 開廳된다. 그리고, 1881년8월4일에는 德源府使와 總領事와의 사이에 「元山津居留地地租約書」¹²⁾이 조인되어 居留地의 기본원칙이 결정된다. 이 約書는, 前記의 豫約에 바탕을 둔 居留地의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인데, 대부분의 내용이 釜山居留지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

본래, 居留地란 주로 경제적인 목적을 가진 條約國의 商人등이 거류하는 지역인 것인데, 元山居留地는 경제적인 무역통상의 목적과 함께, 러시아의 南進意慾에 대비한 軍事的인 중요성에 가치를 두면서, 朝鮮國의 영토일부를 불평등한 일본인 거류지역으로 개방시킨다는 의의를 가지고, 일본정부의 의도에 따라 선정된 곳이다. 그러나, 실제로 元山居留地는 무역항으로서는 그다지 적합하다고는 말할 수 없는 곳이다. 중앙집권적인 국가체제에서 각 분야에서 집중된 都市인 首都漢城과의 거리가 멀고, 무역통상을 위한 背後都市마저 정비되지 않은 점등이 그 이유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점은, 개항초기 元山居留地에서 開店했던 주요무역상의 대부분이, 1882년9월 仁川이 개항되면서 仁川으로 이전해 간 사실에서도 증명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개항이래 朝鮮의 東北部地方에서의 일본인의 거점으로써 그 역할이 충분히 수행될 뿐만 아니라, 일본의 당초 의도대로 군사적인 역할까지도 훌륭하게 맡게 됨은 1894년의 청일전쟁과

9) 이때의 측량결과에 따라 작성된 지도가, 일본해 군제작의<도면1>이다.

1904년의 러일전쟁을 통하여 알 수 있는 일이다.

3. 開港當時의 居留地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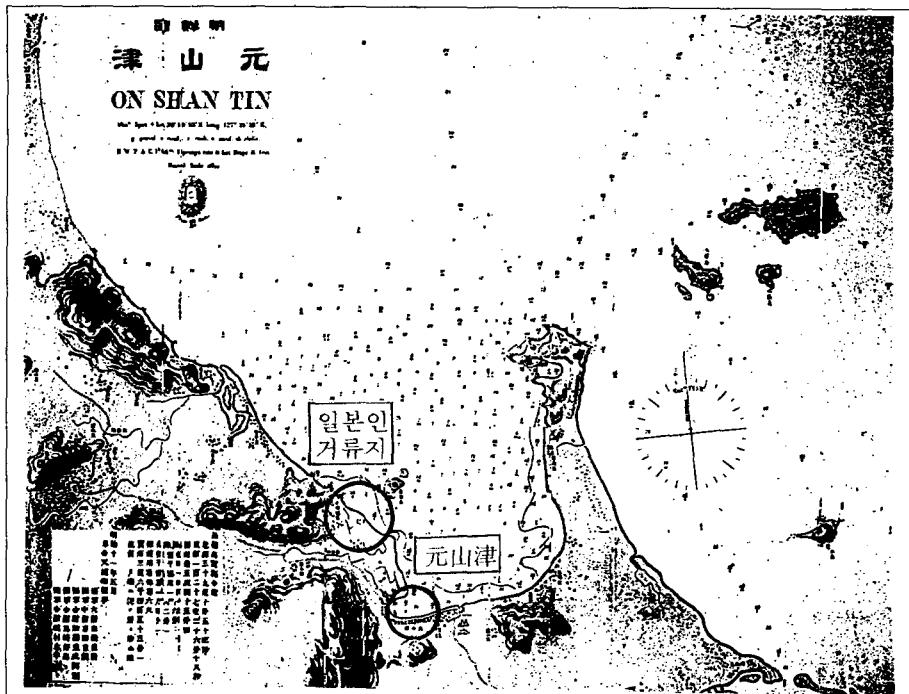
3.1. 駐元山日本領事의 報告書

1880년5월20일, 일본의 영사관원과 商人등 200여명이 元山에 도착하여 23일에는 영사관이 開廳되어 영사업무가 시작되는데, 같은 해 9월에 駐元山領事が 「元山港景況第一號報告書」를 自國으로 보내어 보고하고 있어, 당시의 居留地內의 상황을 기록해 주고 있다. 그 내용을 통하여 개항초기의 元山居留地의 상황, 특히 초기의 都市的 구성의

10) 이 초안은, 일본外相의 訓令에 기초한 내용으로, 철저하게 일본의 의도아래 개항이 추진되었으며, 朝鮮政府측은 그에 대응하는 정도의 防禦的이고 受動的인 태도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당시 朝鮮政府의 기본적인 방침이란, 元山開港도 釜山開港의 예를 기본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前者の 訓令내용은 奧平武彥, 「前揭書」, P.54를 참조하고, 後자는 「承政院日記」, 「日省錄」, 「高宗實錄」 高宗16年5月8日條(孫禎睦의 前揭書, P.117)을 각각 참조.

11) 이 조약의 명칭이 '豫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朝日양측정부의 記名이나 調印을 생략한 채 同意決定한 것이다. 그것은豫約第7條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조약의 내용을 사후조정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豫約은 동년8월30일 朝鮮禮曹判書의 「元山津開港豫約決定書翰」을 일본대리공사에게 발송하여 접수됨을 起點으로, 정식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다. 7개조항으로 구성된 이豫約은, 개항시기·開港場 및 居留地의 대략위치와 규모(제1조), 地租(제2조), 居留地시설(제3조), 일본인거류민묘지(제4조), 海關(稅關)의 설치(제5조), 海關廳舍(제6조), 일본인의 間行里程(제7조)의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釜山居留地의 관례를 따르고 있다. 그全文은 【별첨1】을 참조.

12) 【별첨2】를 참조.



도면 1. 일본해군測量의 元山津부근지도(187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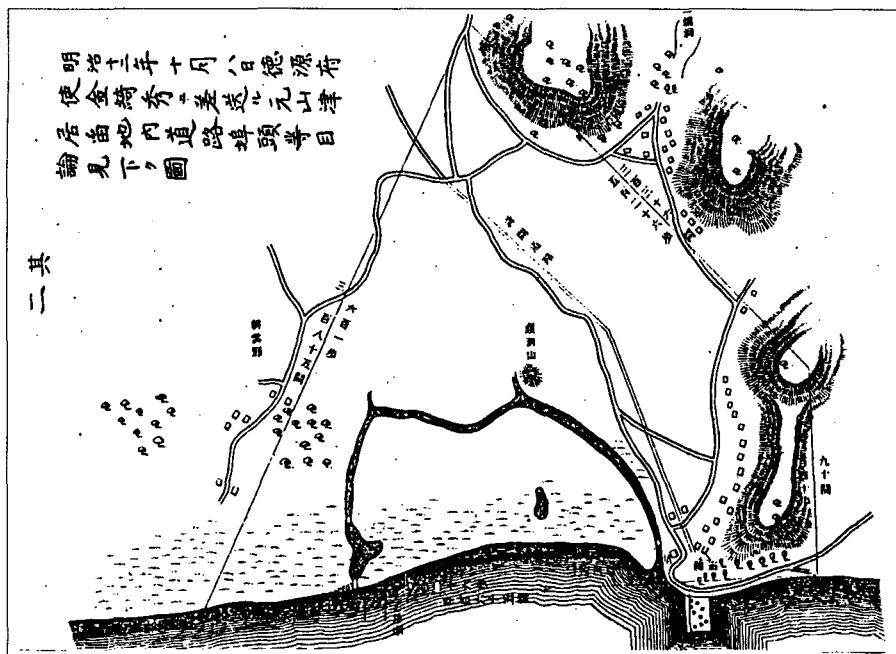
일단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

「朝鮮國元山港은 북위39도10분53초에 위치하며, 咸鏡道德源府의 관할이다. 烽燧洞란 기존의 村落이 있는데, 아마도 이 곳에 烽燧臺가 있어서 유래된 이름이라 사료된다. 이곳의 민가35戶중 23戶가 居留地내에 위치하는데, 2戶는 이미 철거되었으며, 나머지21戶는 朝鮮政府로부터 사들였으나, 전부 보잘것없고 낡아서 전혀 소용이 없는 것이다. 居留地는 약 9만평이며, 지형은 삼각형에 가깝다. 해안에 면한 동북쪽은 길이 약465間¹³⁾, 산기슭에 면한 쪽은 길이 약 426間, 또 들쪽으로는 약385間이 된다. 그러나, 침습한 지역이 많아 길이 약 120間, 폭2間의 도랑을 새로이 설치했다. 市街地의 區劃은 아직 전혀 정하지 않았으나, 그 방침만을 세웠다. 즉, 1200坪을 1區로 하고 다시 4分한 것을 1戶의 택지로 하며, 각區사이에 폭4間의 도로를 만들고, 또 부두에서 居留地외곽으로

폭6間의 大路를 뚫기로 했는데, 이제 착수만 남았다. 부두의 건설은 朝鮮人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이어서, 德源府使로부터의 조회에 따라 大倉組에 일을 의뢰하였다. 大倉組에서 수락하여 増田充績, 十菱常七등과 협동으로 맑은 날의 150일이내에 완공하기로 하고, 7월3일부터 착공하였다. 영사관은 북쪽의 산자락을 뒤로 하여, 현관좌우에 官舍를 배치하고, 病院은 영사관의 서쪽 약40間 떨어진 곳에 축조하는데, 方位는 영사관과 같다. 物産陳列所는 영사관동쪽의 근접지에 배치한다. 그런데, 病院과 官舍는 외관공사를 하고 있고, 나머지는 머지않아 기초공사에 들어간다. 貨付될 地所중에 지금까지 인도된 것은 36명인데, 그 중에서 三菱會社, 第一國立銀行, 神戶商人인 池田組, 長崎商人인 吉見屋의 4명은 이미 가옥건축에 착수하였으며, 大倉組등 3,4명은 머지않아 착수할 것이라 한다.……(후략)¹⁴⁾」

이 보고서를 토대로, 개항초기의 元山居留地의 상황에 대하여 파악,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3) 길이의 單位인 「間」은 주로 토지나 건물에서 사용하며, 1間은 6尺으로, 약1.8m이다(譯註)



도면 2.『元山津開港豫約附圖, 其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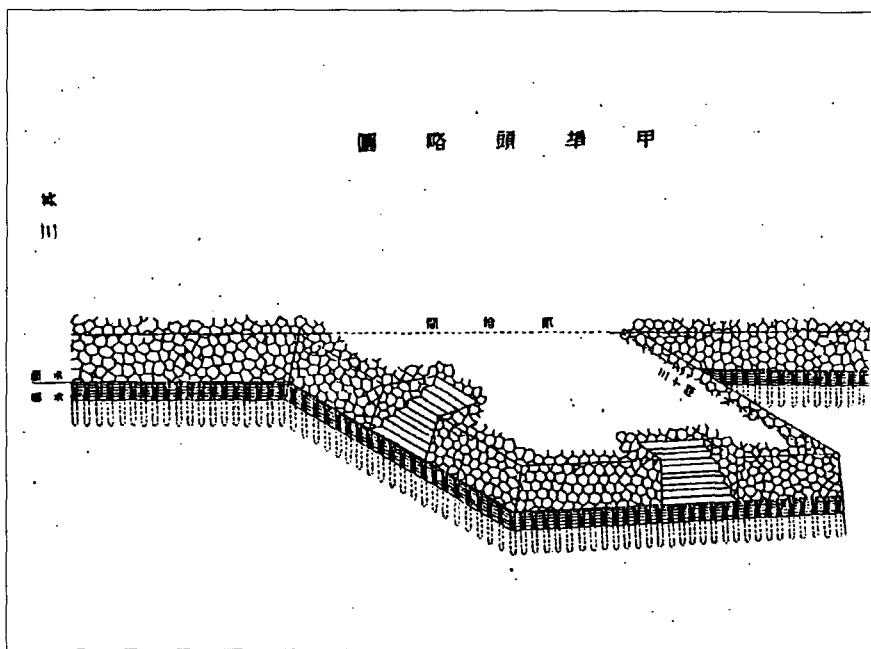
1) 居留地내 및 주변의 朝鮮人 가옥은 전부 35戶의 가옥이 있으며, 그 중 居留地내에 있는 23戶는 朝鮮政府로부터 매수하여 철거한다 : 그러나, <도면2>「元山津開港豫約附圖, 其2」에서 보면, 경계선안의 20戶, 바깥주변의 23戶로 전부 43戶가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어, 일본영사의 보고와는 다소 상이한 내용을 하고 있다. <도면2>는 지도로서의 정밀도는 떨어지지만, 개항교섭당시 朝日양측의 대표가 현지답사후 작성한 도면임을 감안하면, 그 내용적인 면은 정확할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영사의 보고내용에는 의문을 갖지 않을 없으며, 그 의문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도면2>의 내용을 따르기로 한다.

2) 居留地의 경계선길이 및 면적 : 경계선길이의 수치는 <도면2>와 동일하나, 면적과 함께 실제의 상황과 거리가 있음이 이후의 다른 도면에 의해 증명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의 「4. 지형과 면적」의 항목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14) 高尾新右衛門編, 元山發達史, 1916.5, 元山, P.P.25~26에서 인용번역.

3) 居留地내의 시가지계획 및 주요시설 : 開港이후 4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시가지계획을 위한 기본적인 방침만이 세워져 있으며, 居留地內의 주요공공시설은 일본영사관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민간시설에 앞서 공사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5. 街區의構成」의 항목에서 상세로 다룬다.

4) 物產陳列所의 설치 : 居留地내의 공공시설중 物產陳列所를 설치한 것은, 당시 일본측의 開港場에 대한 인식태도의 일부를 엿볼 수 있는 것이다. 物產陳列所의 설치의 목적을, 居留地에 일본의 물품을 전시함으로써, 무역의 번성에一助하도록 한다¹⁵⁾고, 일본인 스스로 견의하고 있다. 物產陳列所는, 仁川이후의 開港場에서는 설치되지 않고, 釜山과 元山居留地에만 설치된 공공시설로써, 초기의 朝鮮開港의 일부의도를 밝혀주는 예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무역통상의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는 하나, 元山開港의 軍事的 의도는 여전히 포함되고 있으며, 정치적인 야심을 보다 노골화시키는 이 이후의 開港場설치에 대한



도면 3. 『元山津開港豫約附圖, 其3』

역설적인 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5) 敷地의 貸付 : 土地의 貸付는 36명에게 이루어 지고, 그 중 일부만이 건축공사에 착수하고 있다. 그러나, 居留地부지의 貸付내용은 居留地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될수 있는 것이나, 현재로서는 파악할수 없는 부분이다. 즉, 몇개의 펼지로 나뉘어 몇명이 어떤 방식으로 대부를 받았는지, 또는 居留地전체가 어떻게 구획되고 분할되어 대부가 이루어 졌는지등,

- 15) 1880년2월당시 일본外相이 總理에게 보낸 上申書를 보면, 「釜山居留地에서의 교역품은 주로 外國產으로, 國產은 불과 20여에 지나지 않아, 國益을 얻지 못하므로, 앞으로의 무역항에서는 國產을 널리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5월1일 새롭게 개항하는 元山津은 서울에서 50여里로, 釜山보다 가까워 서울상인의 왕래도 많을 것이므로, 朝鮮國에 적용할 수 있는 國產品을 골라 新開港場에 진열, 전시함으로써 스스로 구매의욕을 일으켜, 결국 국산품의 수출의 실마리를 잡고, 무역변성에 일조하도록 (下略)……」라고 하여, 그 建築費用5千圓의 예산을 청구하고 있다. 「朝鮮國元山津我物產見本陳列之義ニ付上申」, 日本內閣文庫文書, 1880.2.2을 참조.

都市공간의 형성과 관계되는 중요한 내용이 미해결의 상태로 남아 있는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자료의 밸류와 분석이 요망되는 부분이다.

6) 부두시설의 공사 : 朝鮮側의 技術的인 능력부족으로, 일본의 건설업자가 맡기로 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의 부두시설은, <도면3>에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폭20間(36m), 길이30間(54m)의 규모로, 수면밑에는 말뚝을 박고 수면위로는 석축을 하기로 되어 있으나, 정확한 내용은 파악할 수 없다. 말뚝과 석축사이의 구조등은 이 도면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고, 해안부의 시설규모 또한 알 수 없는 부분이다. 더우기, 1906년이후 韓國建築所의 시설공사로 부두시설을 새로이 확장하고 있어서, 그 원형을 더더욱 알 수 없게 한다.

3.2. 居留民의 人口動向

개항 첫해인 1880년말의 일본인거류민의 수는 총234명(남자210, 여자25)으로, 영사관원 및 부속인원이 75명(남55, 여20/직원5, 경찰관32), 직공100명,

표 1. 일본인거류민의 인구동향(매년도말 현재)

年度	戶數	人口	人/戶	年度	戶數	人口	人/戶	年度	戶數	人口	人/戶
1880	—	235	/	1890	143	680	4.76	1900	355	1,578	4.45
1881	—	281	/	1891	140	655	4.68	1901	354	1,504	4.25
1882	—	260	/	1892	174	704	4.05	1902	395	1,668	4.22
1883	—	199	/	1893	185	795	4.30	1903	430	1,946	4.53
1884	62	173	2.79	1894	202	903	4.47	1904	467	1,895	4.06
1885	73	235	3.22	1895	271	1,362	5.03	1905	693	3,150	4.55
1886	81	279	3.44	1896	310	1,299	4.19	1906	1,046	5,120	4.89
1887	82	374	4.56	1897	326	1,423	4.37	1907	1,028	4,162	4.05
1888	94	433	4.61	1898	347	1,560	4.50	1908	1,219	4,055	3.33
1889	114	598	5.25	1899	366	1,600	4.37	1909	1,312	4,096	3.12

(출전) 高尾新右衛門, 「前掲書」의 해당년도의 기사에서 인용하여 재편집

상인60명으로 되어 있다¹⁶⁾.

이 人口構成을 보면, 새로운 開港場으로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 주고 있다. 첫째, 영사관관계의 인원이 상당히 많은 점을 들 수 있다. 특히, 군대 조직에 필적되는 경찰관의 수가 많은 점은 인상적이다. 이것은, 전혀 새롭게 개항된 居留地의 경영을 위한 행정적인 기반을 확고히 하고, 일본거류민의 보호를 위한 조치의 결과라 판단된다. 貿易과 軍事的인 거점으로서의 가치를 충분히 인식한 결과이기도 한 것이다. 둘째, 職工의 수가 商人보다도 많은 것은, 새로운 시가지의 건설에 따른 수요발생을 나타내는 新居留地에서의 공통적 인 현상이다.

개항당시 元山居留地에 개점한 주요무역상은, 三菱商會, 住友商店, 大倉組, 協同社, 池田組, 立神商會, 三好社, 慶田組, 野中商會, 木村商店, 山口洋行, 奥村商店, 山田商店, 渡邊商店, 吉見屋, 福島組 등으로, 東京, 大阪, 神戶, 鹿兒島, 長崎, 對馬, 山

口, 佐賀등에 본점을 둔 지점들이다.¹⁷⁾ 그러나, 이들 무역상중 상당수는 1882년 仁川이 개항되자 仁川居留地로 이전해 버린다. 그리고, 개항과 동시에 이들 무역상을 뒷받침하는 금융기관으로 國立第一銀行의 元山支店이 설치된다. 이와 같이 영사관을 비롯하여 각종 무역상과 은행등이 開店됨으로써, 居留地로서의 행정및 상업적인 기반은 조성된 셈이 된다.

개항이후 1909년까지 일본인거류민의 인구동향을 정리하면, <표1>과 같다.

이 표에서 보면, 仁川이 개항한 1882년직후에는 인구가 격감하고 있고, 1894년의 청일전쟁 및 1904년의 러일전쟁의 후 1,2년간에는 급증하고 있음을 특징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것은, 보다 많은 경제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새로운 개항지역으로의 이주로 인한 격감과, 양전쟁의 승리로 朝鮮國內에서의 政治外交의 발언권이 강화됨에 따라 안정적인 거류환경과 경제적 이익을 노린 이주에 의한 급증현상을, 각각 나타내는 통계자료

16) 高尾新右衛門編, 「前掲書」, 1916.5, 元山, P.P.22 ~25를 참조.

17) 高尾新右衛門의 「前掲書」, P.21을 참조.

표 2. 일본인거류민의 직업별 분포(매년말현재)

년도(인구)		1	2	3	4	5	건설종사	전직종
1887 (374)	직업	집꾼	중개상	목수	무역상	미장공	/	40
	명수	31	26	21	14	6	29	150
1899 (1600)	직업	집꾼	목화상	어부	솜타기	목수	/	88
	명수	105	53	45	43	32	47	892
1900 (1578)	직업	집꾼	목수	무역상	중개상	목화상	/	69
	명수	97	34	33	28	18	46	454

(출전) 高尾新右衛門, 「前掲書」의 해당년도의 기사에서 인용, 재편집

※ 위의 통계는 실제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류민만의 숫자이다.

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참고로 각戶당 인구의 비례는 건물당 거주인의 수를 계산할 수 있어서, 건물의 규모는 모르지만, 居留地의 건축물 공급상황을 짐작해 볼 수도 있겠다. 즉, 호당 4명전후를 유지하고 있어서, 인구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공급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음도 알 수 있다. 또한, 人口와 戶數의 변화에 기복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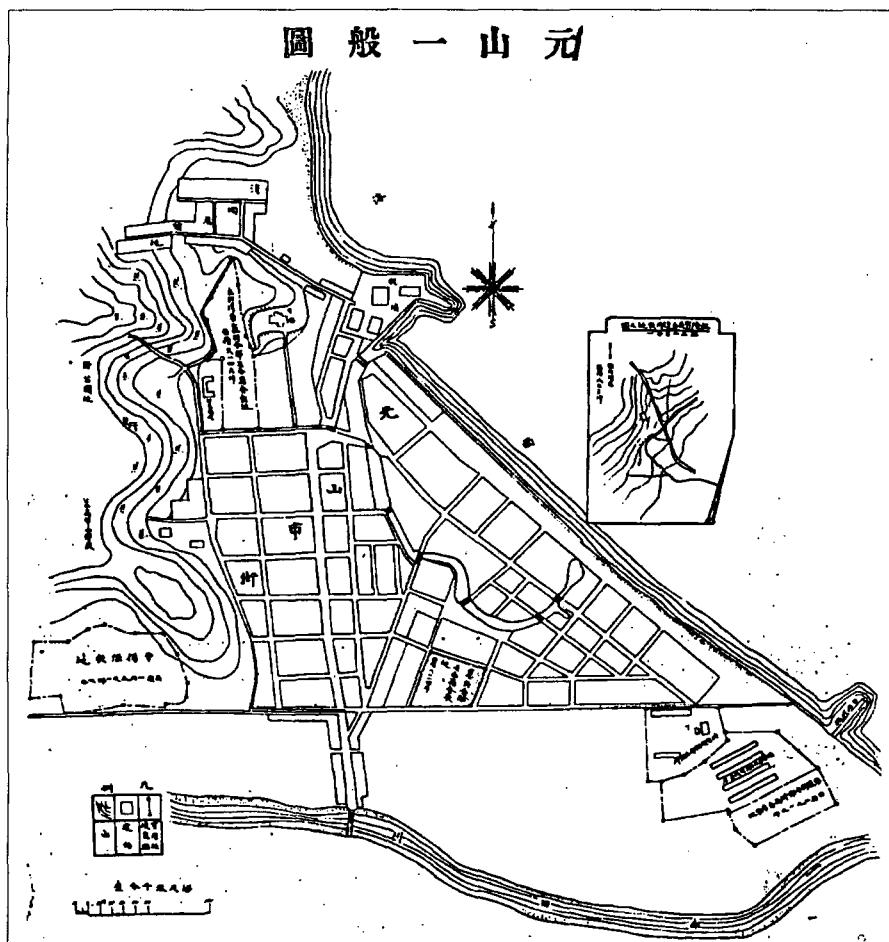
그리고, 일본인거류민에 대한 出身地別의 통계를 보면, 1893년말현재, 長崎縣267명, 山口縣212명, 福岡縣47명, 大分縣41명, 大阪府39명, 佐賀縣26명, 鹿兒島 및 廣島縣20명등으로 집계되고 있어서, 불과 1년간의 통계이기는 하지만, 韓半島와 地理的으로 가까운 地方의 출신자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日本專管居留地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공통된 경향이기도 하다.

또한, 거류민의 職業別 통계를 <표 2>에서 보면, 역시 무역이나 상업관계의 거류민이 가장 많으며, 한편으로 건설관계의 인구도 비교적 많다는 것은, 居留地로서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地形과 面積

元山의 일본인居留地는, 기존의 朝鮮人村落인 元山津의 서남쪽 약2.5km거리의 해안에 위치하고 있다. 居留地의 서쪽과 북쪽으로 丘陵이 이어져 있고, 동쪽은 海岸에 접해 있다. 남쪽으로는 平地로 이어지나, 그 경계선밖으로 『赤田川』이 흐르고 있다.

이 지역에 자리잡고 있던 『烽燧洞』의 가옥들은, 서쪽과 북쪽의 구릉지밑자락에 줄지어 있었음은, 이미 <그림2>에서 나타난 바이다. 이것은, 서북쪽의 구릉지에서 居留地가 되는 지역안으로 흐르는 두갈래의 개천주변의 습지를 피하고, 거의 매년 거듭되는 『赤田川』의 범람피해를 고려한 마을배치의 결과일 것이다. 그러나, 居留地가 되는 지역은 바로 이 濕地를 중앙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 두갈래의 개천중에서 서북쪽의 구릉지에서 해안으로 흐르는 부분(일본영사관부지의 前面에 위치)은 개항초기에 길이120間(216m) 폭2間(1.8m)의 도량을 설치하여 범람에 대비하고 있으나,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개천은 방치하고 있어서, 그 개천에서 해안까지의 지역은 높지대와 같은 상태였다고 한다. 이러한 지형적 특징은 개항 이후의 居留地의 시가지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가지의 형성에 대해서는 다음항에서 상술



도면 4. 「元山一般圖」(1906년이전추정)

하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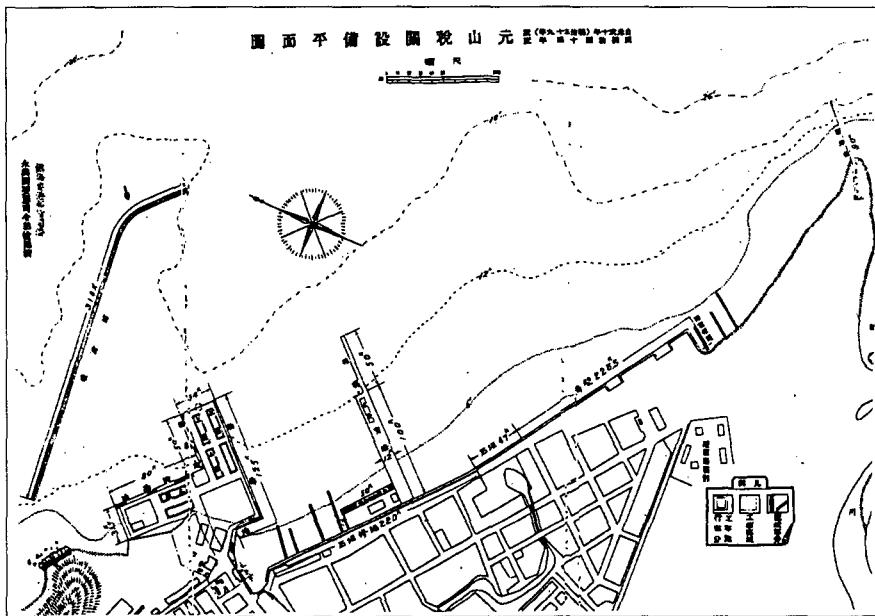
居留地의 범위와 면적에 대하여는, 「3.1項」에서 살펴 보았으나, 경계선길이와 면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었다. 즉, 駐元山일본영사의 보고에서, 465間×426間(336+90)×385間 = 837m×767m(605+162)×693m로 기록되어 있고, 또한 <도면2>『元山津開港豫約附圖,其2』에서도 동일하게 표기되어 있는데, 이러한 초기의 기록이 실제상태와 상이하다는 것이다. <도면4>『元山一般圖』는 1914년4월 발행의 「朝鮮駐屯軍永久兵營,官衙及宿舍建築經過概要」에 실려 있는 도면으로, 일본軍用地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이 지도는 1906년이전에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데¹⁸⁾, 1905년이전의 居留地는

18) 『元山一般圖』의 出典文獻의 発行年은 1914년으

조약에 의거하여, 그 경계등이 엄격하게 통제되므로, 이 지도는 元山居留地의 초기형태를 파악하는데는 대단히 귀중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元山一般圖』에는 居留地의 경계선표시가 없지만, <도면2>의 내용과 대비시켜 경계선을 표시하고 그 경계선의 길이를 측정하면, 각각 545間×491間(373+118)×464間 = 981m×883m(671+212)×835m가 되고, 그 면적은 약 127,000평이 된다. 이

로 되어 있으나, 이 지도의 작성일을 1906년이전으로 추정하는 근거는, 【도면5】(朝鮮總督府編,「朝鮮土木事業誌」,서울, 1928,P.P.721~730)에서 나타나는, 1906년에서 1911년까지 실행된 부두시설이나 해안의 벽안시설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도면 5. 元山居留地의 海岸施設(1906~1911)

결과는 <도면2>에 나타난 居留地境界의 형상이나 면적, 또는 駐元山일본영사의 보고내용과는 상당히 다름을 보여 준다. 이것을 단순한 측량의 실수로 생각해 버릴 수도 있겠으나, 條約上의 면적과 비교하여 40%이상 차이난다는 것은 失手이상의 어떤 態意性이나 欺瞞性을 느끼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의 원인들을 객관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음이 연구상의 현실인 것이다.

5. 街區의 構成

5.1. 개항당시의 街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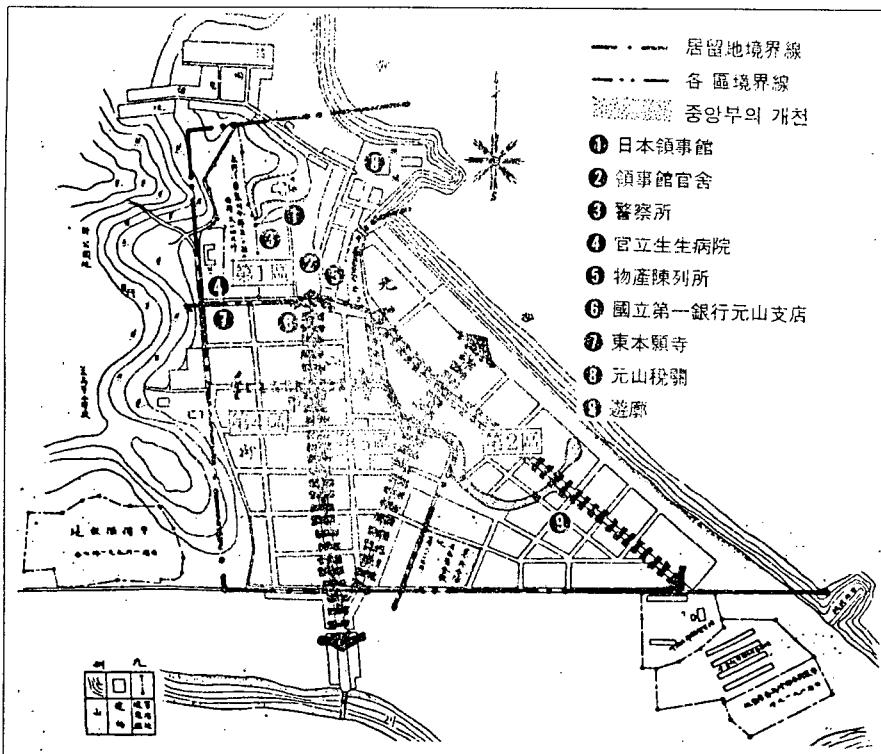
1880년9월의 駐元山일본영사의 보고서의 기록에 따르면, 부두에서 居留地외곽까지 폭6間(10.8m)의 大路를 만들고, 1200평을 1街區로 하여 그 사이에 폭4間(7.2m)의 도로를 내며, 또 1200평의 街區를 4分한 300평을 1戶의 택지를¹⁹⁾로 한다라

19) 당시 일본영사관에서 「地所貸渡規則」을 제정하

는 街區구성의 기본방침을 세우고 있다. 이 방침과 실제의 실행된 街區의 구성(<도면4>참조)은 거의 일치하고 있으나, 일본영사관부앞에서 居留地외곽까지의 大路(1906년이후 本町通이라 명명되므로, 이후 편의상 本町通으로 부르기로 한다)만을 실제로는 9間(15.2m)의 폭으로 하여, 居留地내의 중심가로 및 街區의 南北軸을 이루게 하고 있다. 이 本町通을 포함하여, 부두에서 居留地외곽으로의 大路는, <도면2>에서도 계획표시된「新開道路」로써, 居留地의 중심도로로 삼아 元山津과의 연결도로에 이어지고 있다. 이 도로들은 개항 이후 미포장의 상태로 있다가, 1890년 10월에야 도로의 정비공사계획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1街區1200평의構成은, 일본영사관부지前面의 本町通을 기준으로, 서쪽지구에 한정되어 30間×40間의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本町通의 동쪽지구는 그 반쪽인 30間×20間의

는 데, 최초에는 1戶의 택지를 500평으로 정했다가 너무 넓다는 이유로 1戶300평으로 정하고, 각 택지의 분할시에는 1戶의 1/2인 150평, 1/4인 75평의 사각형으로 분할하도록 정하여, 街區의 형태를 정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高尾新右衛門, 「前掲書」, P.15를 참조.



도면 6. 元山居留地의 公共施設 및 街區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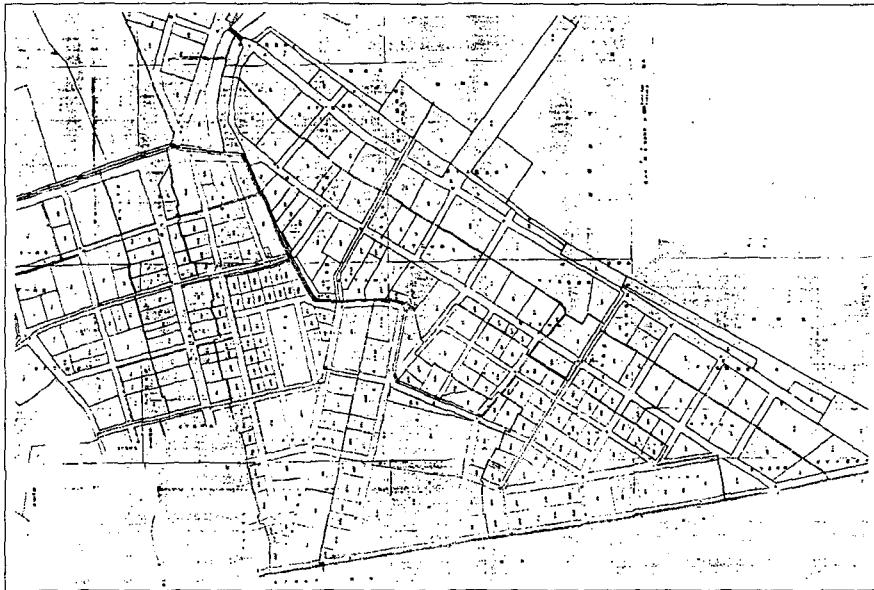
600평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1884년의 居留地내의 모습에 대하여 ‘5,60호의 가옥뿐이고, 군데군데 물웅덩이가 많고 토지는 습윤하여 대단히 비위생적인 상황이었다’라고 한 기록²⁰⁾에서 알 수 있듯이, 居留地의 중심부를 흐르는 개천때문에 동쪽지구가 늪지와 같은 상태여서, 택지로 적합한 부분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 개항당시에는 自然條件의 제約에 적응하면서, 宅地로서 적합한 지역에서부터 시가지의 건설은 시작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1882년 2월에는 居留地를 3개의 區로 구획하여 토지정리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第1區는 居留地의 북쪽지역으로 일본영사관등 공공시설이 집중된 지역, 第2區는 居留地 중앙부의 개천에서 동쪽 해안지역, 第3區는 低地이면서 거주조건이 가장 양호한 남쪽지역으로 각각 나뉜다. 당시에는 각

구역의 명칭은 부여되지 않고 “第幾區몇번지”로 불리웠는데, 지도위에 표시하면 <도면 6>과 같다. 이러한 지역구분은, 그 지역이 갖는 성격에 따른 것으로 생각되는 데, 第1區는 관청및 공공시설의 집중지역, 第2區는 개천과 해안사이의 자연조건이 불량한 지역, 第3區는 택지로서 가장 적합한 상가지역이며, 가장 용이하게 개발할 수 있는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구분은 그 면적이나 거주민의 수와는 전혀 관계없이, 마치 개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지역의 안정도를 기준으로 한 듯한 인상을 준다. 이러한 구분은 거류민의 증가에 따라, 定住開發이 가장 우선되었으리라 생각되는 第3區를, 1890년 12월 本町通의 좌우지역으로 다시 나누어, 그 동쪽을 第3區, 서쪽을 第4區로 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적 편의에 따른 조치로 생각되어 진다.

統監府 및 理事廳의 설치후인 1906년 4월이 되어, 각 지역이 보다 세분화되어 행정적인 지역명칭을 사용하게 되는데, 일본의 행정명칭의 하나인

20) 高尾新右衛門, 「前掲書」, P.57을 참조.



도면 7. 1924년 측량의 地籍圖

町을 사용한다. 第1區는 春日町으로, 第2區는 東町(후에 海岸通으로 개칭), 旭町, 新町(후, 壽町)으로, 第3區는 中町, 柳町(후, 幸町)으로, 第4區는 本町, 西町(후, 泉町)으로, 각각 세분되어 명명되며, 각 도로의 중앙을 그 경계로 한다. 이러한 행정구분은 統監府설치 이후 일본식 행정구역제도를 그대로 이식해 버린 전체적인 현상으로, 朝鮮이란 주권국가의 영토위에 전혀 이질적인 都市制度와 都市空間이 새롭게 완성되었음을 나타내는 역사적 사실의 하나이다.

5.2. 街區의 軸

개항당시는, 해안지역인 동쪽(上記의 第2區)의 자연조건에 의해 개발이 늦추어 진 채, 第3區를 중심으로 한 시가지의 건설이 이루어 지는데, 이 때의 街區軸은 本町通을 기본으로 한 시가지구성이라 할 수 있다. 즉, 일본영사관의 정면에서 朝鮮人마을인 元山津을 향한 本町通이 있어서, 그것에 직교하는 街路를 1街區1200평의 원칙을 가지고 분할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시가지의 구조와 별도로, 1905년 이후 부두항만시설과 岸

壁등의 건설에 따라 第2區지역이 개발되게 되어, 제2의 시가지구성이 이루어 지게 된다.

그러나, 第2區의 街區計劃이 언제 이루어 졌는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元山居留地의 시가지형태에 대하여, 街區의 분할형태와 그 면적, 부지의 형태를 살펴 보면, 第1區, 第3區와 第2區로 구별되기 때문에 동시에 계획된 것은 아니 다라고 추측할 뿐이다. <도면 7>은 1924년 측량의 지적도인데, 第3區의 街區와 필지의 분할은, 최초 시가지분할의 기본으로 삼았던 1街區1200평을 2分, 4分, 8分하는 분할형태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第2區의 경우에는 第1區 및 第3區에서 보이는 街區分割의 형태와도 상이하며, 필지의 규모나 분할형태도 달라, 정연한 감이 적다. 단지, 1881년 12월부로 허가된 遊廓지대인 壽町일대만이 정연하게 필지분할되었을 뿐이다. 이러한 가구나 필지분할의 형태적 차이는, 계획방침이나 계획 시기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라 말할 수 있다.

따라서, 本町通의 軸과는 별도로, 해안을 따라 평행하고 직교하는 가구가 계획된 것이 第2區인 것이다. 第2區는 토지가 습윤하고 居留地의 중심 시설과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거류민의 거주가 뒤늦은 지역인데, 해안지역의 개발에 따라 습윤한

토지의 상태도 개선되는 한편, 개항당시의 부두시설도 새로이 이전, 건설되어 이 지역을 통과하는 새로운 大道路(후, 幸町通)가 건설됨과 함께, 한층 활발한 무역활동과 군관계의 시설등 새로운 都市 기능이 발생하게 되어, 시가지화는 더욱 빨리 진행되었으리라 생각된다.

결국, 元山居留地의 시가지의 기본적인 구성은, 중앙부의 개천의 존재에서 기인되는 2개의 軸으로 이루어져, 二重의 구조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다. 즉, 개항당시부터 居留地의 중심부를 구성해 온 南北軸과, 해안의 매축과 항만시설의 건설이후 활발해 지는 해안지역의 斜線軸인 것이다. 다시 말해, 南北軸의 중심도로는 本町通이며, 斜線軸의 중심도로는 幸町通인 것이다. 이 두 줄기의 중심도로는, 그 지역의 개발시기가 각각 다르면서도, 居留地의 남쪽외곽(本町4丁目)에서 한 줄기로 합쳐져서 元山진으로 이어지는 도로가 되고 있다. 다시 이 한 줄기의 도로는 元山津을 통과하여, 首都漢城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궁극적으로는 首都를 향한 시가지의 구성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6. 市街地施設 및 建築物의 建設

1880년 5월 20일, 최초로 일본영사관official 등이 元山居留地에 도착하여, 稅關부근의 朝鮮人 가옥을 빌어, 23일에 일본영사관의 가설사무소를 개청한다. 그 이후, <도면 4>에 표시된 府廳의 위치보다 아래쪽에 영사관건물을 건설, 동년 11월 2일에 낙성한다. 또한 관사는 本館의 전면도로의 양편에 설치한다. 그리고, 物產陳列所가 같은 해 10월 27일에 낙성되고, 警察所, 國立第一銀行支店, 官立生生病院, 東本願寺別所등, 공공기관의 建築이 같은 해 말까지 건설된다. 이것들은 영사관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는 데, 특히 영사관은 居留地전체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 또 居留地의 중심도로인 本町通의 한쪽 끝에 위치시켜²¹⁾, 위암감마저 느낄 수 있도록 배치한다. 민간의 가옥들도 그 주

변을 중심으로 건설되어 감은 쉽게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1881년 12월 居留地동쪽의 한편에 遊廓²²⁾의 영업을 3년을期限으로 특별허가하는데, 이곳은 중심부의 개천에 면하여 습하고도 황량한 지역이고, 상가지역과도 거리가 있는 동떨어진 지역이었다.

개항전인 1880년 2월, 일본外相은, 元山居留地를 무역항으로 건설하고 많은 상인이 개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립주택20戶에 한해 1戶당 500圓을 대부해줄 수 있도록, 예산 1万圓을 건의하고 있다.²³⁾ 이 건의는 일본정부내에서 채택되어, 1880년 9월 14일 駐元山 일본영사관에서 「扶助金貸渡規則」으로 발포되는데, 寒波등에 대비한 견고한 건축물의 건설과 함께 元山居留地에의 이주를 장려하기 위한 것이 된다. 이 規則에 따르면, 1881년까지는 무이자로 거취하고 1882년 1월부터 년5부의 이자를 붙여 10년간 변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가옥과 창고는 영구건물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 扶助金제도는, 다음 해 6월이 되어도 예산의 잔금이 있었다²⁴⁾고 하니, 그 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884년의 기록에 의하면, 居留地내에는 중심부에 50~60戶의 가옥이 있을 뿐이라 하며, 해안시설개발의 직전인 1904년의 기록에 의하면, 海岸通(동쪽지역)에는 2,3戶의 인가가 있을 뿐이며, 壽町에는 유홍업(遊廓)의 3戶가 있었으며, 壽町과 幸町에는 현병분대와 兵營만이 인가가 없는 풀밭에 자리잡고 있었고, 泉町과 本町3丁目주변에는 군데군데 채소밭이 있으며, 本町4丁目(居留지남쪽)에 일본인 상가가 점점이 있을 뿐이며, 전체적으로 공지가 많았다²⁵⁾,라는 것이다. 이러한 기록에서 알

21) 이러한 배치방법은 他居留地에서도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어서, 민간에 대한 일본정부의 위압적인 자세를 엿보게 한다.

22) 이 遊廓은 개업이후 저조한 상태가 계속되지만, 거류민의 증가에 따라 1903년에는 90間×20間의 지역으로 확장지정되게 된다. 高尾新右衛門, 「前掲書」, P.329을 참조.

23) 日本內閣文庫文書, 「甲第16號, 朝鮮國元山津商店取建方之義上申」, 1880.2.2을 참조.

24) 高尾新右衛門, 「前掲書」, P.14를 참조.

수 있듯이, 거류민수 약2천여명에 달하는 時點 (<표1>의 1904년통계)에서도, 시가지의 개발은 本町通을 중심으로 한 일부지역에 한해 밀집되어 이루어 졌으며, 第2區를 비롯한 本町通에서 떨어진 지역은 여전히 개발이 뒤떨어져 있었고, 1906년이후의 해안시설의 건설과 함께 시가지로서의 면모가 갖추기 시작되었다고 생각된다.

元山居留地에의 移住가 저조한 가운데, 1887년 4월에 영사관부지前面의 도랑을 따라 버드나무를 심거나, 시가지의 10개소에 가로등을 설치하고, 다리를 목제로 개조하지만, 같은 해 8월 대홍수의 피해를 입게 되어 각 하천의 제방을 다시 쌓고 도로와 교량등의 공공시설을 복구하게 된다. 이 때, 건축물의 건설에 있어서, 第1區는 도로보다 1尺5寸(45cm)이상, 이외의 匸는 2尺(60cm정도)이상 높게 지반을 높힐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1889년8월 駐元山일본영사는 「本町通家屋建築內規」를 발표하여, 本町通에 면하는 건물에 대하여, 1) 가옥신축은 전면길이5.4m 및 축면길이3.6m이상으로 할 것, 2) 지붕은 기와로 할 것, 3) 벽은 토벽이나 판벽으로 하되, 토벽은 겉을 마무리한다, 4) 건물은 도로에 면하여 가지런히 앉힐 것, 5) 경계는 삼나무나 소나무를 재료로 하여 보기싫지 않게 울타리를 설치할 것의 5개항목을 정한다. 단, 제1항에서의 치수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석조, 土藏이나, 서양식의 견고한 것은 특별히 허가한다고 했다. 이 内規에 의하여 규모, 구조, 외관이 정비된 영구건축을 건설하도록 지도, 제한하여, 시가지의 면모를 갖추기 위한 건축규칙을 마련하게 된다. 그러나, 이 내규의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居留地내의 건축물중에는 위의 기준에도 못미치는 보잘것 없는 규모와 외관을 가진 것들이 상당수 있었다는 점인데, 이것은 당시 거류민의 경제적 불안정이나, 居留地정착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25) 高尾新右衛門의 「前掲書」, P.380~381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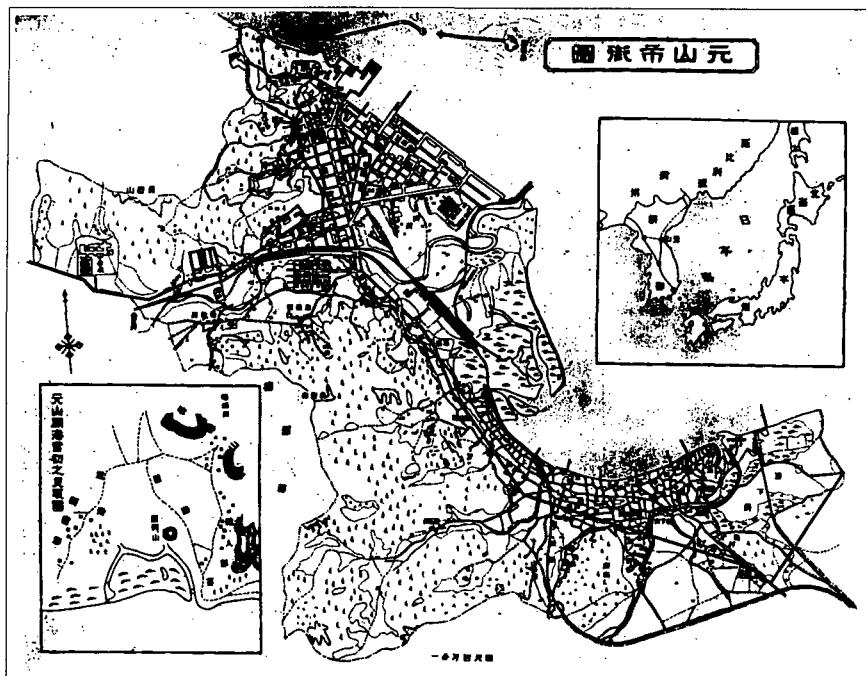
7. 居留地밖으로의 市街地擴張 과 그 方向

開港初期, 거류민의 이주상황이 저조하여 시가지의 전체적인 조성은 늦어지게 되지만, 本町通을 중심으로 한 시가지화는 서서히 이루어 졌음을, 前項에서 파악하였다. 그러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겪으면서, 거류민이 증가하게 되고 居留地의 밖에까지 거주하게 된다. 1896년의 기록에 의하면, 居留地의 남쪽인접지역(후, 本町通4丁目)의 朝鮮人 토지를 구입하여 점포를 내는 일본인이 적지 않아, 이들에게도 居留地費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다.²⁶⁾ 이러한 행위에 따른 시가지화는, <도면 4>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그리고, 1906년 7월 현재의 居留地밖의 元山진거주의 일본인수는 400명이라는 기록²⁷⁾이 있다. 또한, 1922년 발행의 <도면8>과 1927년발행의 <도면9>을 비교해 보면, 居留地域과 元山津이 점차 시가지의 확장에 의하여 서로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도면9> 元山港圖에 나타난 지명을 보더라도, 居留地남쪽의 本町(4丁目)과 그 남쪽의 「榮町」이란 일본식의 명칭을 찾을 수 있고, 다시 남쪽에는 「石隅洞」이란 朝鮮式의 명칭이 보인다. 행정개편시 기존의 朝鮮人지역에는 일본식의 행정지역명칭을 부여하지 않았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하면, 이것은 일본인에 의한 居留地域의 확장에 의한 시가지화가 이루어 졌음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居留地밖으로의 확장은 기존의 朝鮮人地域을 목표로 진행되었음을 단정지을 수 있다.

이러한 居留地밖의 거주행위는 불법행위임에

26) 居留地밖의 토지의 매매와 저당에 관한 公證의 문제를 묻는 조회에 대한 답신으로, 일본영사는 居留地안밖을 막론하고 공증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거류민회에서는 토지대장을 마련했다, 고한다. 高尾新右衛門의 前掲書, P.P.227~228을 참조.

27) 高尾新右衛門의 「前掲書」, P.405를 참조. 이 이외에도, 永興110명, 咸興650명, 北青300명등으로 짐계되어 있다.



도면 8. 1922년의 元山府地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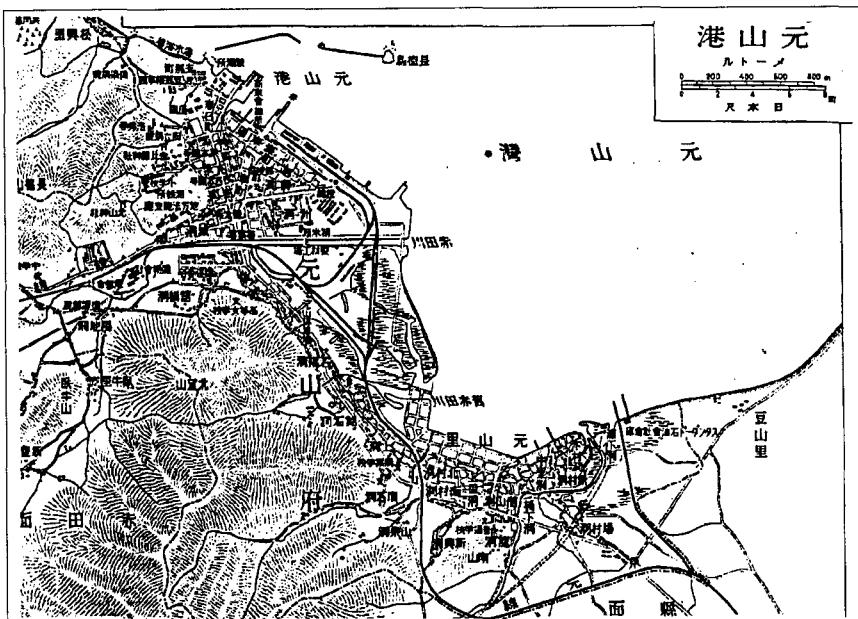
틀림없으나, 당시 朝鮮政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었음과 함께, 朝鮮政府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증대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 주는 사실인 것이다. 개항조약에 포함되어 있는 間行里程의 조항에 의하여, 居留地밖 20km 범위의 여행만을 허용하고 있고, 이는 개항교섭당시 朝鮮政府에서 강력하게 어필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그러나, 1884년7월의 「間行里程取極約書」의 조인에 따라, 間行里程은 40km로 확대되고 만다. 이러한 내륙지방으로의 여행허용은 일본인에게 부동산買入의 기회를 주게 되어, 일본인들은 買入과 抵當의 방법으로 토지를 취득해 갔던 것이다²⁸⁾. 게다가, 1906년10월20일에는 勅令 제65호 「土地家屋證明規

則」이 제정되어, 외국인의 토지취득은 합법화되고 만다.

朝鮮의 국내외정세의 변화와 함께 행하여 진 일본인의 元山居留地밖으로의 시가지확장은, 거류를 위한 면적을 넓히고자 했던 불법적인 행위이며, 기존의 朝鮮人마을인 元山津과의 교역및 거리를 단축시켜 통상무역상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침식행위인 것이다. 또한, 元山津쪽에서 居留地의 일본상인과의 교역을 위한 접근행위가 있었음도 사실이다²⁹⁾. 그러나, 이러한 통상교역을 위한 확대와 상호접근행위를 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로 생각하기에는, 朝鮮國의 이후의 역사가 매우 특수하였다는 것이다. 불평등한 居留地의 설치를 포함하여 居留地의 확장행위는 주권국가의 영토를 무단침식한 침략행위의 한 예라고 단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居留地의 설치

28) 1902년6월의 元山居留民의 문의에 대한 일본영사의 대답에 의하면, 居留地에서 4km이내의 토지는 현재 외국인의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토지가 아니더라도 토지위의 수확물에 대한 예매의 방법도 있으므로, 朝鮮人을 납세자로 하여 등록해 놓으면 별다른 위험이 없다고 지시하고 있다. 山本庫太郎, 「最新朝鮮移住案内」, 東京, 1904.6, P.P.202~210을 참고.

29) 이러한 경향은, 元山개항이래의 仁川, 木浦등의 外國人居留地주변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특히 仁川居留地안팎의 인구동향중에서 朝鮮人的 인구가 급증하는 예를 보면 쉽게 알 수 있는 일이다.



도면 9. 1927년의 元山府地圖

는 朝鮮의 기존都市와는 전혀 이질적이고 변형된都市空間과 都市文化를 이식시킨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8. 結

以上에서, 元山의 開港 및 居留地의 설정은, 시종 일본정부의 意志인 통상무역항의 개설과 군사적 중요성에 의하여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元山居留地의 경계설정은 부산의 예를 답습하고 있으나, 그 실제면적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기만적이라는 일본에 대한 의구심과 朝鮮政府의 열악한 技術상태와 방만한 외교대응 자세를 읽을 수 있다. 元山居留地의 이러한 초기의 착오는 居留地의 불법적인 확장으로 이어지고, 이러한 확장의 최종목표를 首都漢城으로 이어가는 결과를 낳았다고 말 할 수도 있겠다. 이러한 사실은 韓國近代가 갖는 타율적이고 수동적인 성격을 그대로 대변해 주는 실례이다.

元山居留地의 都市空間은, 朝鮮內에서의 정치

외교적인 불안정에 따라 일본인거류민의 이주가 저조했던 초기에는, 자연조건에 순응하여 기본적인 都市공간을 구성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정세가 안정적으로 변화하고 거류민이 증가하면서, 점차 개발의 의지가 발휘되어, 자연조건을 극복하는 都市공간이 형성되게 된다. 이에 따라, 居留地의 都市공간에도 서로 다른 2개의 街區軸과 시가지 형태를 보이게 된다. 그리고, 그러한 개발의지는 기존의 朝鮮人마을을 향하여 확장되는 樣相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元山居留地의 개발은 철저하게 일본인들의 意志를 반영하는 것으로, 朝鮮人の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居留地의 都市空間은 전혀 이질적인 것이 될 수 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이질적인 都市空間이 韓國의 都市內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게 되는 시발점을 마련하였음은, 이후의 歷史展開過程을 통하여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都市란, 인간활동의 集積物이며 시간의 蓄積物이기도 하다. 그렇기 때문에, 都市를 보는 눈은 歷史的 眼目이어야 한다.

【별첨1】

元山津開港豫約(己卯年七月十三日同意決定)

第一款

朝鮮政府朝鮮曆庚辰三月以後,當爲日本人民貿易,開咸鏡道元山津.其居留地於長德山及其西面

海處定之.其幅員據草梁館實測.

第二款

居留地租.仍其地從前之租額.更加除計算第三款所載,兩政府經費以議定.

第三款

經始日本人居留地.爲朝鮮政府之任.故兩國委員會同商議.榛蕪磊塊之可芟除.道路橋梁之可架造

者.朝鮮政府爲措辦之.但安排宅地,修理街路等,日本政府任之.

第四款

居留地近傍.以無碍之地.爲日本人墓地.租額照其地從前所入納之.

第五款

朝鮮政府築成埠頭.起自長德山西海岸,至長德島.可意時修.

【별첨2】

元山津居留地地租約書 (辛巳年七月十日調印)

為相考事朝鮮國德源府管下元山港日本國人民居留地基幅員總如日本曆明治十二年十月十日日本國代理公使花房義質所致於朝鮮政府之國式元山津開港予約第二款云居留地租仍其地從前之租額更加除計算第三款所載兩政府經費以議定雖然居留地之爲經營可以漸作之而難予期年月則加除計算者甚不易行故今日本國總領事前田獻吉商議朝鮮國德源府使金綺秀居留地租姑依釜山港例約每歲納金五拾圓但每歲抄完清翌年租額若數年之後欲改正之則須付兩國協議又居留地內道路橋梁修築等除照會德源府使未至落成者外其可以漸作者則不復煩朝鮮政府之經費又居留地外長德山北烽燧台下日本人墓地一區一為烽燧台下公道以南一此租額約每歲納金壹圓但納稅期同前為此立約鈴印互相交付以照憑信

朝鮮曆 辛巳 七月 初十日

德源府使 金 綺秀 (印)

日本曆明治十四年八月初四日

總 領 事 前田獻吉 (印)

참 고 문 헌

- 孫禎睦, 「韓國開港期 都市變化過程研究」, 一志社, 1982, 서울
- 田保橋潔, 「近代朝鮮の開港研究」, 『小田先生頌壽記念朝鮮論集』, 1934, 서울
- 奥平武彦, 「朝鮮の條約港と居留地」, 岩波書店, 1937, 東京
- 韓國統監府編, 「韓國條約類纂」, 1908, 東京
- 高尾新右衛門, 「元山發達史」, 1916, 元山
- 朝鮮總督府編, 「朝鮮土木事業誌」, 1928, 서울
- 朝鮮軍駐屯軍經理部編, 「朝鮮軍駐屯軍永久兵營, 官衙及宿舍建築經過概要」, 1914, 서울

A Study On the Process of the Urban Form in Wonsan Concession

Yang, Sang Ho

(Lecture of Myongji University and Kyongwon University)

ABSTRACT

This paper is one of Korean towns in the period of Korean-Modern,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shaping the present cities of Korea. In the concrete, this study deals with the urban form of the Japanese Concession at Womsan where is the second Open Port in Korea. By the way, both of the Open Port and the Concession were the town that not exist before the period of Korean-Modern, and the town that symbolize the historical characters of the period of Korean-Modern. On this study, it is intended to analyze the situations of establishment, the process of the urban form, and the meanings of Concession, from 1880 to 1910, the period when had been kept up the nature of the Concession mainly.

The Japanese Concession at Wonsan was urged it's establishment by Japan Government that is conscious of the purpose of foreign trade and military importance. But, it was slow in progress of developing town because of the distance from the capital 'Han Yang', today we called it Seoul, and lack of the background towns. However, after both the wars of 1895 and 1904, Japanese residents were increased and urban aspects were advanced.

The urban form of Japanese Concession was devided two territories by the natural circumstances, so that was made a difference on the period of the development. And finally, it had double axis on the form of district. Furthermore, by increasing of residence, it was occurred that new Japanese resident arwa was occupied and expanded illegally between the road which is toward the existing Korean village 'Womsan-Jin(元山津)'. This indeed is the illegal extension of the Japanese Concession at Wonsan.

Conclusively, Concession turned out the primary factor that Korean towns are altered with the heterogeneous ones in the period of Korean-Modern.